

성희롱·추행 및 직장내 갑질,  
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 
감사결과 보고서

2019. 4.

□□□위원회 상임감사

# I. 감사실시 개요

---

## 1. 감사 배경 및 목적

□□□위원회 자회사인 △△△(주) 소속 특정인(◇◇◇운영팀장 AAA)이 오랜기간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언, 폭력 등 '직장 내 갑질행위' 혐의사실을 □□□위원회가 운영하는 익명부패신고시스템(레드휘슬)로 제보되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.

## 2. 감사범위 및 중점사항

본 감사는 제보된 특정인(◇◇◇운영팀장 AAA)의 폭언 및 폭력, 성희롱·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대면조사 후 감사대상자를 조사 하였으며, 감사대상자의 폭언 등 녹음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제보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.

한편, 감사대상자는 2018.12.7.(금) 실지감사 후 사직서를 제출('18.XX.8.)하였으나 사직서 처리가 거부되자, 2015.12.15.(토) △△△ (前)대표이사 BBB, <<팀장 CCC, DDD 3인에게 다른 직원들과 관련된 자신의 비위행위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자의 비위행위가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 등 위반행위 인지를 중점 조사하였다.

- 성희롱 및 성추행, 폭언·폭력, 인격모독 등 직장 내 갑질행위
- 위계를 악용한 부당한 업무 및 사적업무 지시
- 거래업체에게 금품요구·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

### 3. 감사인원 및 기간

- 감사인원 : 2명(□□□위원회 EEE, △△△(주) FFF)
  - \* □□□위원회 감사부와 △△△(주) 감사실 합동감사 추진
- 사무분장
  - EEE : 감사총괄 및 감사대상자(AAA) 대면조사 등
  - FFF :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 등 대면조사 등
- 감사기간 : 2018.12.3.(월) ~ 2019.3.29.(금)
  - 실지감사(3일) : 2018.12.7.(금) / 2019.1.14.(금) / 2019.2.15.(금)
  - 감사결과 심의회의 : 2019.3.29.(금)

구분	추진기간	감사내용	감사자
사전조사	2018.12.3.~12.6.	피해자, 참고인 조사	FFF
실지감사 (1차 출석요구)	2018.12.7.(금)	감사대상자 대면조사	EEE, FFF
보강조사 (2차 출석요구)	2018.12.10.~12.15	피해자, 참고인 조사	FFF
	2018.12.26.	감사대상자 미출석	EEE, FFF
추가사건 실지감사 (3차 출석요구)	2019.1.2.~1.3.	추가 비위사실 조사	FFF
	2019.1.4.(금)	사건 관련자 대면조사	EEE, FFF
	2019.2.15.(금)	추가 비위사실 조사	EEE, GGG

※ 당초 실지감사는 2018.12.7.(금) 감사대상자를 조사하였으나 실지감사 이후 추가 비위 행위가 포착되어 2019.1.4.(금) 추가사건 실지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감사대상자가 감사를 회피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활동이 진행하지 못하다 3차 출석명령에 대상자가 출두하여 2019.2.15.(금) 추가사건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하였다.

## II. 감사결과

### 1. 총평

- △△△(주) ◇◇◇운영팀 AAA(19XX.05.09.)은 201X.4.12.부터 201X.12.31.까지 ○○  
○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, 201X.1.1부터 현재(201X.12)까지 ◇◇◇운영팀장의 직  
위에서 업무를 수행함.
- AAA은 공공기관의 간부(팀장)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및 윤리지침 등 규정 따라  
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해서는 안되며,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직장 질서를 유지  
해야 하고 법령과 규정에 정한 공직자 준수해야 하는 위법하고 부당 행위가 확  
인됨.
- **(성희롱 및 성추행)** ○○○팀장 근무 당시부터 ◇◇◇운영팀으로 보직변경 된 후  
201X.2월까지 여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,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적인 발언과  
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.
- **(하급직원에 대한 폭언)** ○○○팀부터 ◇◇◇운영팀 근무기간 동안 여러 팀원을  
대상으로 업무지시와 질책을 명목으로 폭언을 지속해 왔으며 근무시간, 퇴근 후,  
휴무일에도 폭언과 욕설 등을 함.
- **(인격모독 및 비하, 협박)** ○○○팀과 ◇◇◇운영팀 근무기간 동안 HHH, JJJ,  
KKK, LLL 등 주로 사무실 근무자 또는 업무지시를 자주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  
로 인격모독적 발언과 협박성을 발언을 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 
심하여 공황장애 등 치료를 받았음.
- **(폭력 및 공포 분위기 조성)** ○○○팀 당시에는 주로 사원 JJJ를 대상으로 하  
였고, ◇◇◇운영팀에는 KKK, JJJ를 대상으로 회의시간에 불펜이나 회의자료, 결  
재판으로 머리 등을 치는 행위를 함. 또한, 직접 가격하지 않아도 주먹을 울리며  
때리려는 행위를 자주하여 직원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함.
- **(부당업무 및 사적업무 지시)** JJJ 등 하급자들에게 지인용 경매를 통한 회원권 대  
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업무시간에 사적인 심부름, 온라인 대리수강 등 부당 지시.
- **(협박 및 청탁금지법 위반)** 1차 실지감사 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되자,  
대표이사 등 3명에게 다른 위반행위를 문자로 발송하여 협박을 하였고, 거래처에  
금품요구 및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.

## 2. 지적사항 총괄

총건수	합계		변상	징계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
	신분상 조치 인원	재정상 조치 금액			소계	추징	감액	기타						
1	1	-	-	1	-	-	-	-	-	-	-	-	-	-

## Ⅲ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### 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일련 번호	제 목 (지적사항)	처분 요구사항	비고
1	성희롱·추행 및 직장내 갑질, 청탁금지법 위반	징계·문책 (과면)	△△△(주)

### 2. 현지조치사항 일람표

일련 번호	감사대상기관 (관계기관/부서)	제 목	조치 사항	금액	인원	감사관
1	△△△(주)	피해자에 대한 감사대상자의 위계에 의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하여 직위해제 조치	직위해제 (직무정지)	-	1	EEE, FFF

## IV. 기타사항

---

### 1.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

- 성희롱 예방교육 및 행동강령 교육을 하고 있으나, 금번 감사대상자와 같은 사람(특히, 팀장 등 간부급)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내부통제 및 피해자의 신고 등 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.

### 2.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항

- 감사대상자 문답과정 중 납품처 등 거래업체에게 제공되는 상품(금품)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바, 추후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